

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 
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·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영 조례」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

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본 조례의 별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(제1호), 분할납부 신청서(제2호), 이의신청서(제3호), 광역교통시설 부과대상사업 승인 인가 준공검사 등 내역서(제4호),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 인가 준공검사 등 내역서(제5호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,

서울 시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! 그리고 교통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